

인신매매방지법

더 자세[✓]히 알아보기

일반교육생용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여전히 우리 생활 속에 발생하는 인신매매

● 빠르게 확산하는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 TIP)

- 국가 간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며 범세계적 문제로 대두된 인신매매로 인한 영향과 피해가 막대

인신매매 범죄를 근절하기 어려운 이유

● 인신매매 구분의 어려움

-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인신매매 유형 변화로 인해 인신매매 행위 및 피해자 불명확
- 노동력 착취, 성적 착취, 장기 적출 등 다양한 피해 형태

● 검거 및 처벌의 어려움

- 여러 국가를 이동하며 이루어지는 초국가적 조직 범죄의 형태

인신매매의 이익 구조와 가해자 처벌의 한계

● 인신매매 관련 법/제도의 한계

- 인신매매 관련 법안이 제정된 국가가 많지 않아 인신매매 가해자가 기소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음
- 법안이 있더라도 이행을 위한 사법기관의 훈련이 미흡하여 가해자 처벌 가능성은 더욱 낮음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 (팔레르모 의정서(Palermo Protocol))

● 국제사회의 의정서 채택 이유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인신매매
 - ▶ 냉전 이후 세계화, 국경 개방, 경제적 불균형으로 이주민이 증가하며 이들이 인신매매의 타깃이 되었고, 이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심각한 범죄로 인식됨
 - ▶ 국제적인 공동 대응(협력과 공조)의 필요성 대두

● 의정서 채택 과정

- 1999년 의정서 초안 논의
- 2000년 11월 15일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의 3개 부속 의정서 중 하나로,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채택

● 우리나라의 가입 시기

- 2015년 11월 25일 186번째 당사국 가입
(2013년 형법 인신매매죄(제289조)조항 신설 등 국내 이행 입법 조치 완료 후 2015년에 비준)

● 4P 원칙

Prevention	Protection
인신매매에 대한 예방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Prosecution	Partnership
가해자의 기소	협력

● 가입국에 대한 요구사항

- 인신매매 범죄화: 법률로 인신매매가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에서 피해자 지원·보호 및 귀환 지원
- 국경 통제, 출입국 서류 취급·관리 등 이주 관리 체계 마련
- 인신매매 방지와 근절을 위한 훈련, 연구, 관련 정보 제공
- 서명·비준 관련 기술적 조항 준수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예방 및 방지 활동

● 「형법」 개정(2013.04.)

- ✓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자에 대한 처벌 및 가중 처벌 규정 신설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① 모집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팔레르모 의정서」와 우리나라 「형법」의 차이

「팔레르모 의정서」	우리나라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신매매 수단이 착취를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신매매 관련 규정은 있지만 정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신매매죄를 적용할 때 기존 ‘부녀매매죄’에서 보여준 대법원 판례처럼 "매매"의 개념을 좁게 판단할 경우, 새로 신설된 인신매매죄가 실제로 많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할 우려

“선제적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필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및 공포(2021.04.)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배경

- 우리나라보다 먼저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들의 입법 사례
: 「형법」이나 별도의 특별법에서 팔레르모 의정서 수준의 인신매매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 규정을 가지고 팔레르모 의정서의 규율 태도를 따름
- 외국의 입법 사례를 통한 인신매매 정의 규정 마련의 필요성

● 핵심

주요 내용

- ✓ 인신매매 개념을 국내 기준에 맞게 확대
- ✓ 피해자 조기 발견과 보호 체계 구축
- ✓ 인신매매 방지 기반 조성

의의

- ✓ 인신매매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임을 명확히 함
- ✓ 인신매매 피해자는 마땅히 지원과 보상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으로 명문화 함



- 인신매매등피해자 조기 식별 강조

- ▶ 인신매매등피해자는 신분증 압수, 이동 제한, 폭력 및 협박, 월급 미지급 등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통제로 인해 외부에 도움 요청이 어려움
- ▶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보호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인신매매의 징후를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필요
- ▶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대상 교육과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 의무화

- 「인신매매방지법」 제13조는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 고시하고,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활용을 권고’하도록 인신매매 개념을 국내 기준에 맞게 확대
- 「팔레르모 의정서」 제3조에 명시된 행위-수단-목적으로 구성된 인신매매의 정의는 다양한 국가들의 식별지표에 활용
- 여성가족부 고시 <피해자 식별지표>도 「팔레르모 의정서」의 행위-수단-착취 목적 순으로 구성

행위	① 모집	② 운송	③ 은닉	④ 인계인수
수단	① 위력(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 포함) ② 위계(사기·기만 등 유인 포함) ③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 (권력남용, 취약성 이용, 지배관리 등 포함)			
착취 목적	① 공통	③ 노동력 착취		
	② 성매매와 성적 착취	④ 장기적출 등 착취		

「팔레르모 의정서」	「인신매매방지법」
<p>제3조 용어의 사용</p> <p>가.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악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 또는 이익의 제공이나 수령에 의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p> <p>착취는 최소한, 타인의 성매매를 이용한 착취나 그 밖의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이나 강제고용, 노예제도나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또는 장기의 적출을 포함한다.</p>	<p>제2조(정의)</p> <p>1.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이하 아동·청소년”이라 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p> <p>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매매하는 행위</p> <p>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p> <p>다.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p>

<p>「팔레르모 의정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신매매’를 ‘착취’를 목적으로 하고, 위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을 이동시키는 등의 ‘행위’로 정의 → 인신매매에 대한 포괄적 개념
<p>「인신매매방지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신매매’라는 용어 자체가 사람을 매매한다는 의미로만 이해되기에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음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인신매매방지법」에서는 ‘인신매매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형법상 규정과도 구별할 수 있도록 함



인신매매의 존재

-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인신매매
- 범죄 조직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성적 착취 등으로 인한 피해, 신고 기관 및 방법 부지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인신매매는 ‘보이지 않는 범죄’라 불리는 만큼, 피해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신매매등’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총 3,236건 발생
- UNODC의 <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2024>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 2022년에 전세계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25% 증가

인신매매의 대상

✓ 우리 사회의 취약한 개인

- 예) 성매매 강요, 장애인 노동력 착취, 이주 노동자 착취
- 아동, 여성, 장애인, 노숙인, 이주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

인신매매의 발생 원인

- 기회의 부족과 빈곤
 - ▶ 정치적 불안, 빈곤 등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를 피해 국내/해외로 거주지 이동
 - ▶ 그 과정에서 불법 조직에 의해 노동력·성적 착취 피해를 당하게 됨
- 법과 정책의 허점을 악용하여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취약 계층 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현황 더 알아보기

①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2017)

- 2016년 기준 약 2,490만 명이 강제 노동이나 성적 착취를 당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6년에 세계적으로 약 400만 명 증가

② 미국 국무부

- 2017년 기준 전 세계 인신매매 피해자가 약 2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고, 이 중 대부분은 여성과 아동, 외국인
*출처: '보이지 않는 범죄'...글로벌 인신매매 여전히 기승 [세계는 지금] (세계일보, 2018.12.04) 등
- 전 세계 인신매매 관련 기소 건수는 2012년 7,909건에서 2016년 17,880건으로 증가

③ 유엔 마약범죄국(UNODC) 보고서(2016)

- 인신매매 피해자 71%가 여성이며, 28%가 18세 미만의 아동
- 성인 여성 피해자의 72%는 강제 성매매 등 성적 착취
- 성인 남성은 대부분 강제 노동(85.7%)

④ 세계보건기구(WHO)(2007)

- 전 세계 장기 이식의 5~10%가 불법적으로 적출된 장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

⑤ 국제노동기구(ILO)

‘2021년 현대 노예제의 글로벌 상황 보고서’

- 전 세계 인구 중 4,960만 명이 강제 노동에 시달림



인신매매에 대한 잘못된 상식

Q1. 인신매매는 특정 국가에서만 주로 일어나는 문제다?

- 인신매매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생
- 세계화와 기술의 발달로 전 지구의 상호연결성이 증가하며 범죄 조직도 대규모화 되고, 그로 인해 초국가적 범죄도 증가

Q2.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는 납치당한다?

- 허위 광고에 유인되거나 지인 등의 소개로 스스로 찾아가거나 연락함으로써 가해자와 연루되는, 사기나 기만으로 인한 자발적 가입도 상당수

Q3. 교육을 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만 인신매매의 대상이 된다?

- 다양한 사람들이 매매의 대상
- 고학력자들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취업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입기도 함

Q4. 인신매매의 목적은 성매매이다?

- 성적 착취 외에도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의 경우도 있음

Q5.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피해자는 외국인이다?

-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도 인신매매 발생 가능

Q6.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여성만 인신매매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여성 뿐 아니라 다양하게 발생 가능
- 여성, 아동·청소년은 주로 성적 착취 노출 가능성
- 남성은 주로 노동력 착취 노출 가능성



Q7. 인신매매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치면 되는 것 아닌가?

- 처음부터 위력, 위계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인신매매 범죄 조직
- 가해자가 피해자와 유대감을 형성하여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통제
- 한정된 정보로 인하여 피해자는 스스로 피해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움
- 물리적으로 벗어나더라도 가족이나 지인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됨
- 다양하고 교묘한 형태의 정서적·경제적 통제로 인하여 피해자는 혼자 고통을 감당하는 것을 선택

Q8.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례 존재

Q9. 인신매매 피해자는 밀입국한 사람들이다?

- 인신매매와 밀입국의 비교

구분	인신매매	밀입국
과정	- 기만·강압을 통한 피해자 착취로 가해자가 금전적 이익을 얻음	- 중개자를 통한 불법 입국으로 중개자에게 대가 지불
형태	- 사람이 대상 - 장기간 피해자 착취	- 이주자가 목적지 도달 시 행위 종료
범위	- 국가 안에서도 발생	- 항상 국가 간 발생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의 중요성 및 장점

①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의 중요성

- 정확한 피해자 식별을 통해 적절한 도움 제공 가능
- 우리나라 피해자 식별의 목표
 - ▶ 「팔레르모 의정서」와 「인신매매방지법」의 정의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 여부를 판단한 후 필요한 지원이나 법적조치 등을 진행
-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성폭력 등 착취당하는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법률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 식별이 필수적

② 신속한 피해자 식별의 장점

- 피해자 안정적 보호
- 조직적 인신매매 범죄의 경우 범죄 경로를 추적하고 진술을 확보하여 범죄자 처벌 및 추가적 범죄 예방
- 예) 체류 비자가 없는 외국인인 인신매매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지만, 제대로 식별되지 않으면 강제 출국 당하거나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되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

피해자 식별은 피해자에게 긴급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첫걸음이자, 인신매매 범죄를 예방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

③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

- 인신매매 가해자와 관련 주변인들에 대한 두려움
 - ▶ 감시당하고 있거나 감금 상태일 수 있으며, 가족을 향한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 다수
- 집행 당국에 대한 두려움
 - ▶ 불법 체류자인 경우, 적발 시 자신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 생각함
- 자신이 피해자임을 인식하지 못함
 - ▶ 오히려 착취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절차

- ① <피해자 식별지표>(여성가족부 개발 및 고시) 관련 교육을 통해 인신매매등의 정의와 식별지표 숙지 후 해당 내용을 피해자 상담 시 반영
- ② 피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심 징후 및 신호 관찰
 - 인신매매등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위계적 상황 여부 판단
- ③ <피해자 식별지표>를 활용한 피해자 여부 확인 절차
 - 행위, 수단, 착취 목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 ④ 필요 시 인신매매등피해자 확인서 신청
- ⑤ 피해자 지원 또는 법적 구제
 -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염두에 두며 대상에 따른 아동 친화성, 장애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문화적 적합성 등 고려

피해자 식별 시 유념 사항

-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 인신매매 피해자는 여성, 외국인, 아동·청소년, 노인, 발달장애인 등 광범위
- 피해자들을 수사 중 또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만날 수 있으나, 때론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담 및 피해 식별절차를 거부하기도 함

인신매매 가해자가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 | | |
|-------------|-----------------|
| ① 이동의 자유 제한 | ③ 타인과의 접촉 제한 |
| ② 감시 | ④ 피해자 가족의 안전 위협 |
- ✓ 가해자의 통제와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는 한정된 정보만을 알게 되고, 지원기관·지원자에 대해 신뢰를 갖기 어렵게 됨
 - ✓ 피해자들은 경제적 이유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신고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울 수 있음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의 역할

- ① 피해자와 충분한 신뢰관계 형성하기
- ②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하기
- ③ 피해자의 환경과 조건 이해하기
- ④ **피해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 상담 과정 중 알게 된 피해자의 비밀은 철저히 비공개 처리됨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함
- ⑤ 상담의 전 과정에서 의사결정권이 보장된다는 사실과, 피해 상황은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며 이후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지시키기
- ⑥ 관계 부처, 수사기관, 연계기관 등의 연계상황을 알리기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의 현장 적용

- 식별 지표를 활용하는 경찰이나 출입국 관리 공무원, 근로 감독관, 관련 시설 전문가 등은 업무 수행 중에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인신매매가 의심되는 개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요건 하나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보다는, 위법적이고 부당한 수단에 의해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식별지표 체크는 인터뷰 진행자가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후 진행자가 직접 하는 것이 좋음
 - ✓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과 우호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

피해자 식별지표 세부 내용 – 착취 목적

항목	요소
고용 또는 이주과정(모집, 이동, 입국 후 등)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하는 채무 (증빙서류 준비, 비자발급, 이동경비, 숙박비용, 중개수수료 등) 또는 이탈보증금에 대한 변제를 구실로 급여, 퇴직급여를 공제당하거나 스스로 관리하지 못했다.	공통
자유의사에 따라 일을 그만둘 수 없었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받았다.	
성매매로 단속되거나 성적 착취를 당했다.	성매매와 성적 착취
적법한 근로조건(최저임금, 수당, 근로 및 휴게시간, 숙식제공 등)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노동력 착취
계약 조건에 없는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당했고,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육체적 폭력 또는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	
당사자가 장기 적출을 주장하거나 신체의 흔적이나 상처로 인해 불법 장기이식이 의심된다.	장기적출 등 착취



피해자 식별지표 세부 내용 - 수단

항목	요소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폭행과 협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동하거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거나 고립되었다.	위력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 포함)
모집 당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고지) 들은(받은) 것과 실제로 한 일이나 근로조건이 달랐지만,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위계 (사기·기만 등 유인 포함)
본인 또는 가족이 모집인에게 진 부채, 급여통장이나 신분증 같은 서류를 본인 의사에 반하여 소유하지 못하는 등 통제로 인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떠날 수 없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 (권력남용, 취약성 이용, 지배관리 등 포함)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일 경우 수단 요건 불필요

1 위력

-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적 힘으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
-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경제적·사회적 압력도 포함
 - ▶ 강요(형법 제324조)
 - : 폭행이나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 ▶ 체포·감금(형법 제276조)
 - :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며, 감금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 ▶ 약취(형법 제287조, 제290조)
 - : 폭력을 수단으로,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 3 자의 실력적 지배 상태로 옮기는 것



2 위계

- 일정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착각, 오인,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대법원 2022.02.11. 선고 2021도12394 판결)
 - ▶ 사기
: 사람을 속여 그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 즉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
 - ▶ 기만
: 말이나 행동으로 사람을 속여서 거짓을 믿게 만드는 것
 - ▶ 유인
: 기망이나 유혹의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이나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 관계로 옮기는 행위(대법원 1996.02.27. 선고 95도2980 판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

■ 권력남용

: 권력을 가진 개인, 그룹, 혹은 기관이 그 권력을 부당하게 혹은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즉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위력의 행사를 뜻함

공박한 상태(공박한 상태는 「팔레르모 의정서」 ‘취약한 지위’보다 좁은 개념)

- ▶ 공박한 상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공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 (대법원 2002.10.22. 선고 2002 다 38927 판결)
- ▶ 취약한 지위: 취약한 지위에 놓인 피해자는 다른 차선의 선택지가 없어 인신매매등 행위자에 의한 부당한 처우를 따를 수밖에 없음
- ▶ 예) 고령, 장애 여부, 낮은 교육 수준, 성별, 빈곤, 장기적 실업, 이주로 인한 네트워크 부족, 언어 미숙, 알코올중독, 착취자와의 정서적 결속 등

■ 경제적 통제 수단

- ▶ 인신매매 가해자는 피해자와 일종의 채무 관계를 형성하고 피해자의 수입을 몰수하며 빚을 갚을 것을 강요

대표적 예) 송출 비용

송출 비용의 문제점

- ① 부당한 비용 청구
- ② 채무액보다 더 큰 담보 요구
- ③ 가족·지인 연대채무 예속
 - ▶ 이동 경비에 중개 수수료까지 추가하여 피해자를 더욱 통제하기도 함

■ 물리적 통제 수단

- ▶ 숙소에서 고용주 및 다른 사람들이 드나들며 감시, 반복적인 언어 및 육체적 폭력

■ 정서적 통제 수단

- ▶ 지인들에 대한 보복성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협박(대다수 이주민 피해자들이 출신 국가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악용)
- ▶ 가해자들이 지역 유지나 권력 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가족·지인을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참는 것을 악용



피해자 식별지표 세부 내용 - 행위

항목	요소
본인 및 가족 연락망을 통하여, 또는 취업 광고(인쇄매체, 라디오, TV,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를 보고 모집인을 만나 수수료(중개료, 이탈보증금 등)를 주기로 약속했다.	모집
살던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소지, 다른 나라로 이동했으며, 사전 동의 없이 모집을 한 사람 또는 이동을 시킨 사람과 목적지까지 동행하였다.	운송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입·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일정 기간 머물러 있어야 했다.	은닉
모집을 한 사람 또는 이동시킨 사람에 의해 제3자에게 인계되었다.	인계인수

1 모집

- 인쇄매체, 인터넷, TV, SNS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모집
 - ▶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모델 캐스팅 등을 미끼로 한 허위 광고 게시
 - ▶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클릭 유도 후,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접촉하는 방식
- 합법 업체 위장 모집
 - ▶ 구직자 모집 후, 실제로는 열악한 환경 속 노동이나 성 착취
 - ▶ 정식 채용 절차를 가장해 피해자를 속임
 - ▶ 계약서에 불리한 조건을 숨기거나 강요하여 착취
- 가족·지인 등 사적 관계를 통한 모집
 - ▶ 경제적 빈곤 가정 내 친인척 인신매매 사례 존재
 - ▶ 신뢰를 악용한 인적 착취

2 운송

- 모집자가 인신매매등피해자를 인수받아 운송하여 다른 인신매매 행위자에게 피해자를 인계하는 경우도 있으나,
- 모집자와 운송자가 다르거나, 인수를 받을 때는 없었던 ‘착취 목적’이나 ‘협박 등의 수단’이 운송 중 발생 가능
- 운송자가 피해자 착취를 당할 것임을 알면서 이동시키는 경우가 중요



3 은닉

- 피해자를 범죄자나 범죄 조직으로부터 구출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
- 피해자를 호텔, 모텔, 아파트, 주택 등 숙박시설에 숨기는 것
-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없도록 경제적, 정서적으로 압박하는 것

4 인계와 인수

- 모집자가 운송도 관여 가능하며, 모집자는 피해자를 인수받은 후 운송하여, 다른 인신매매등 행위자에게 인계하기도 함
- ‘모집’과 연결된 경우가 많음



피해자 식별 절차

① 성적·노동력 착취 의심 사례 발견

② 지원 기관에 연계하여 보호조치

③ 피해자 식별지표를 활용하여
피해자 상담 진행 및 결정

인신매매는 아니지만
취약한 개인으로
판단될 경우

다른 지원 제공

인신매매 피해자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 확인서
신청

1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인신매매방지법」 제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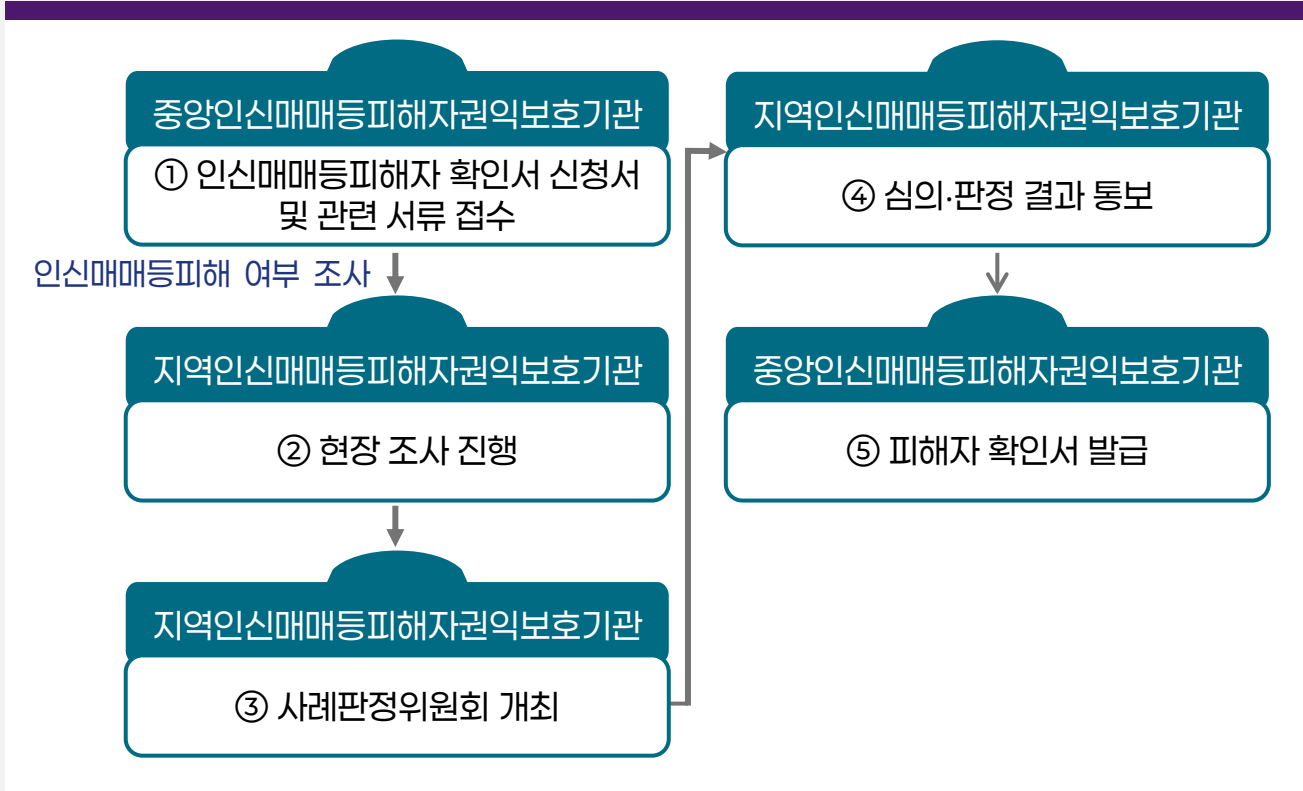
- ①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판정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판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 확인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2022.12.13.>

- 인신매매 피해자나 신고의무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 이때 피해자 여부를 심의하고 판정하기 위해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설치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

항목	요소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폭행과 협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동하거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거나 고립되었다.	위력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 포함)
모집 당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고지) 들은(받은) 것과 실제로 한 일이나 근로조건이 달랐지만,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위계 (사기·기만 등 유인 포함)
본인 또는 가족이 모집인에게 진 부채, 급여통장이나 신분증 같은 서류를 본인 의사에 반하여 소유하지 못하는 등 통제로 인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떠날 수 없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 (권력남용, 취약성 이용, 지배관리 등 포함)

3 발급절차



※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서 접수,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피해자 확인서 발급은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현장 조사는 피해자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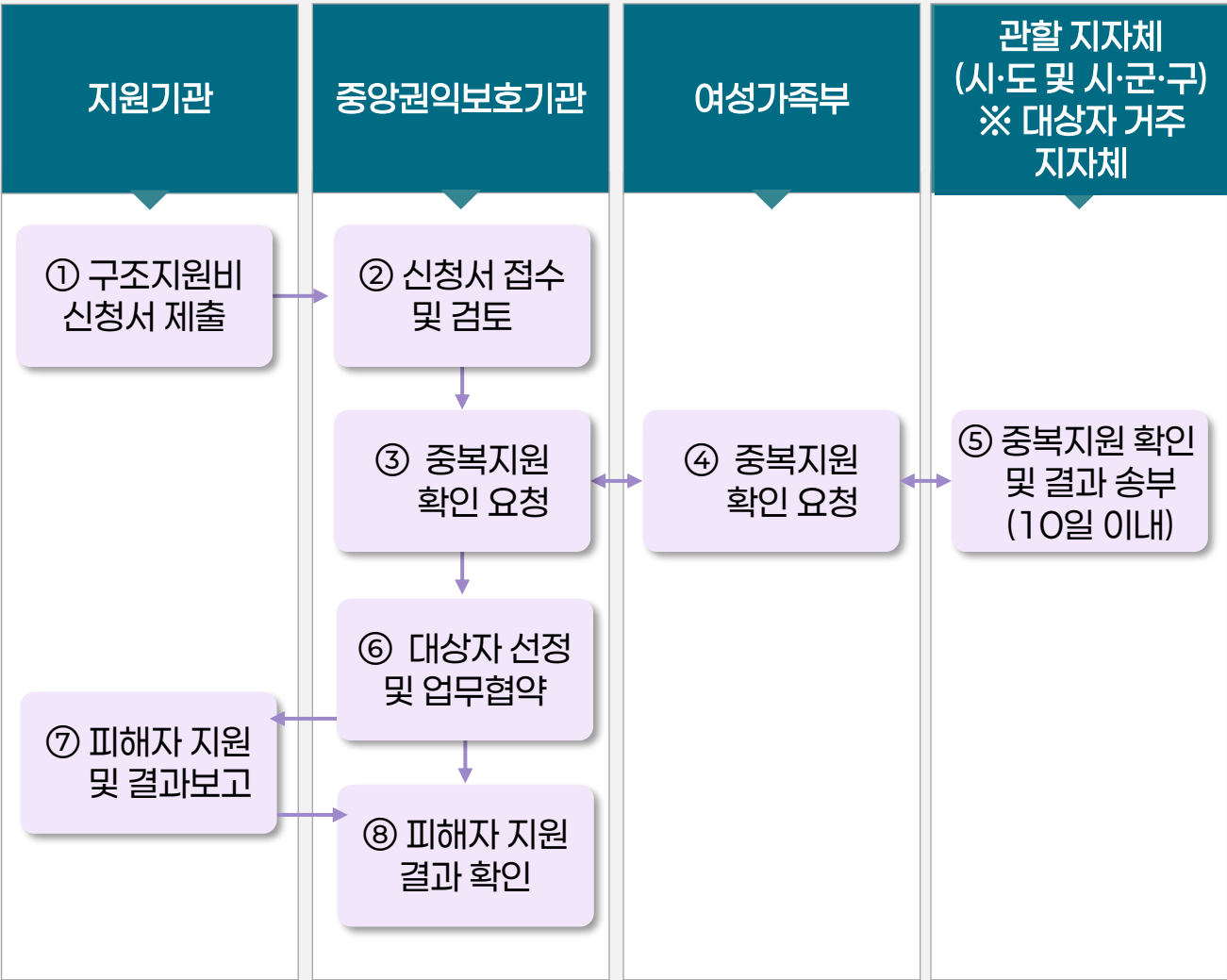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1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지원항목

구분	근거	지원금액	지원조건	지원방법
취업지원	제26조	1인당 총 150만 원 한도	출석률 80%	수강료, 재료비 등
법률지원	제27조	1인당 600만 원 한도	필요시	실비
의료지원	제28조	1인당 총 500만 원 한도	필요시	중앙권익보호기관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
생계지원	제30조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급여 기준 *1인당 3회 지원 (최대 6회) 원칙	소득조사 진행 후 지원	신청인 계좌로 현금지급
귀국지원	제31조	실비	필요시	실비
통역지원		1인당 총 150만 원 한도	의료, 법률 지원시 통번역이 필요한 경우	통역료, 번역료 기준 준수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2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사업추진 체계도



인신매매등범죄의 예방과 근절

피해자 보호·지원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